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간 협력 추진에 따라 특허출원시 미생물기탁을 인정하는 기탁기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려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품목을 포함시키는 한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외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기관 인정 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4조)

- 1) 부다페스트조약(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경우 체약국 간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과 양국의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해주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국내 특허출원시 인정하는 기탁기관에 추가하고, 해당 기탁기관에서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

- 3)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한
민국과 상대국이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게 됨에 따
라 상대 국가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미생물기
탁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의 대상 및 운영규정 정비(안 제
7조)

- 1) 마약류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
는 판결(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50 및 2018허2267)이 확
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
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행정규칙(특허
청고시)을 법령에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대상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하고, 존속
기간연장 대상발명의 불실시기간 산정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특허
청장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 3)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허
용하게 됨에 따라 헌법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
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간 산정 등에 대한 행정규칙 운영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 1) 해외 주요국 대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시 제외되는 기간)을 좁게 규정함에 따라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 3)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조정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의 계약국이 아닌 국가로서 해당 국가의 특허청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특허청장과 합의한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탁기관”이라 한다)

제3조 중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을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을 각각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을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또는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산정과 그 밖에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과목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로, “재심사를 청구한 날”을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한 날”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특허출원의 심사를 위해 이 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핵산 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른 서열목록을 말한다)을 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

구일 후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
까지의 기간

어.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 후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어번역
문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부 칙

이 영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 다]의 발명

② -----

-----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① -----

-----.

1. -----

----- 한정한 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

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
로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하
다)-----

2. (생략)

<신설>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
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
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
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
한다.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대하
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산정
과 그 밖에 허가등에 따른 특허
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장이 정한다.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
된 기간) ① -----

1. -----

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 타. (생략)

파.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하. ~ 버. (생략)

<신설>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

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한 날--

하. ~ 버. (현행과 같음)

서. 특허출원의 심사를 위해 이 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신 설>

2. ~ 4. (생 략)

② (생 략)

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른 서열목록을 말한다)을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일 후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어.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 후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마감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5399